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21일
발 의 자: 최재란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유정인,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한 신, 홍국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는 미비한 상황임.
-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 나. 시장이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6제1항)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의6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u>서울지방경찰청장</u>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u> --- ----- -----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u>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u>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 ----- ----- ----- ----- ----- ----- <u>서울경찰청장</u> ----- ----- -----.</p>
<p>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략)</p>	<p>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p>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② -----

서울경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